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7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 규정 수정	3
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10
※ 참고자료	
[참고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규정	19
[참고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농식품부 고시)	21
[참고3]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22
[참고4]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휴업·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

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농산물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 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제10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 규정 수정

현행법은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국세 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④ ----- ----- ----- ----- -----국세

현 행	개 정 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나. 검토의견

1)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제도 현황

현행법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이하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¹⁾.

구체적으로는 현행법 제5조²⁾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법 제6조³⁾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제도 개요 >

구 분	내 용
개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대상품목	농수산물·가공품 985개, 음식점 29개 품목
대상업체	1,677천개소(농식품 판매·가공 731천개소, 음식점 946천개소)
실적	- 원산지 표시 이행률(%) (’13)95.2 → (’18)95.6 → (’20)96.6 → (’21)97.0 → (’22)96.8 → (’23)97.3
대상별 표기방법	① 농산물: 포장재, 푼말, 표시판 등에 표시하며,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표기하고, 외국산은 ‘통관 시 원산지(국가명)’를 표기 ② 가공품: 국내 제조 가공품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 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를 표시 ③ 음식점: 메뉴판, 게시판, 주간 메뉴판 등에 표시(원산지표시판 대체 가능)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9.

- 3)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현행법 제6조의2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징수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원산지 조사·단속 실적에 따르면 '18년부터 '24년 10월까지의 적발률은 매년 1.30~1.86%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 >

(단위: 개소,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사업체(A)			275,163	174,353	168,273	187,157	234,472	244,222
적발실적(B)			4,004	2,969	3,115	3,191	3,451	3,178
적발률(B/A)			1.46	1.70	1.86	1.70	1.47	1.30
조치내역	거짓표시		2,396	1,661	1,634	1,637	1,745	1,645
	미표시	개소	1,608	1,308	1,481	1,554	1,706	1,533
		과태료(백만원)	439	383	431	567	630	540

※ 주 :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실적에는 통신판매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5. 1. 8.

4)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5)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참고자료1에서 정리함

<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과건수	38	61	23	9	14	20	7
부과금액	1,462	1,996	1,789	759	685	419	4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5. 1. 8.

2) 검토의견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2020. 12. 29.)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⁶⁾의 징수 등을 규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⁷⁾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세징수법」은 2020년 12월에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제징수’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행정

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8. 6. 제정, 2014. 8. 7. 시행),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20. 3. 24. 시행)

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임.

따라서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 규정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간의 법률 정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 입법례: 과징금 체납처분 준용 규정 관련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5.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의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징수 시 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이 가능할 것임.⁸⁾

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또한,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금전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상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구 분	내 용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법 제6조)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 →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에 대한 각종 금융제재 등이 가해질 수 있음.
대금지급 정지 (법 제7조)	○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의2)	○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7조의3)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4. 12. 20.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술할 안 제10조의4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등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계 조문 제10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①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 농산물등을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 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수입 농산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이력관리수입 농산물등을 지정하거나 유통이력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농산물등을 국내 농산물등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 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가. 관계 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신고 이행 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세청의 수입업자 수입신고 자료 및 국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업자 사업자등록 자료 등의 행정정보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을 수정 수용함.

2) 관세청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 자료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같은 법 제116조9)에 따라 비밀유지가 원칙임.

동 자료를 「관세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제공범위가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3) 국세청

자료제공에 관하여 규정하는 개정안을 수용함.

9)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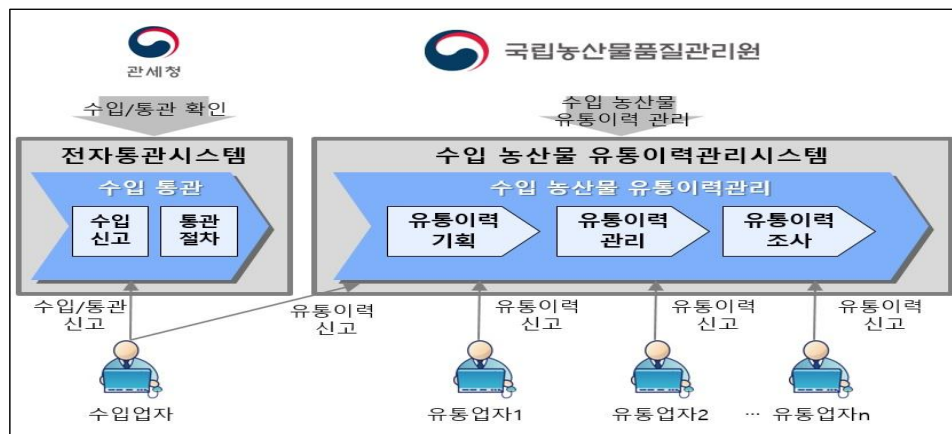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1)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 현황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유해성이 존재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이후 유통 거래를 신고¹⁰⁾하게 함으로써 유해 물품을 발견하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관 안전 대책임.

<수입 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수입·유통업체)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입에서 최종 판매시점까지의 거래 내역 신고



- 수입업자 및 유통업체(재양도 업체 포함)는 수입농산물등 양도 내역을 순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신고의무자) 수입·유통업자(도매·소매를 겸하는자)
 -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 사업자등록증(번호)이 없는 경우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 (신고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을 통해 전산입력으로 신고하고, 전산 신고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원·사무소에 제출
* 「수입수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1호 서식
 - (신고기간) 수입·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하고, 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판매 당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5일을 계산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른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0만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16.

10) 유통이력관리수입농성물등 수입신고 양식은 참고자료1 참조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 (‘24.11 월 기준) : 37개>

종류		종류	
1	양파(신선·냉장)/(껍질을 벗긴 것)	20	마늘(신선/냉장)/껍질을 벗긴것
2	양파(신선·냉장)기타	21	마늘(신선/냉장)/기타
3	양파(냉동)	22	표고버섯(신선/냉장)
4	도라지	23	표고버섯(건조)
5	건조한 도라지	24	대추(냉동)
6	냉동마늘	25	대추(건조)
7	냉동고추	26	생강(건조)
8	팔	27	생강(파쇄 또는 분쇄)
9	건고추	28	생강(신선·냉장)
10	콩(대두)	29	녹두(건조)
11	땅콩/(꼬투리를 벗긴 것)	30	고사리(냉동)
12	땅콩 조제품	31	고사리(건조)
13	참깨분	32	당근
14	볶은 참깨분	33	대파(냉동)
15	황기	34	대파(건조)
16	당귀	35	대파(신선·냉장)
17	지황	36	산양삼
18	작약	37	천연꿀
19	김치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2024. 12. 16.

동 제도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멜라민 유제품 파동 등 수입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형성되자, 관세청이 수입 물품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임.

본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관리 및 조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각각 담당하였음.

그런데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1년 11월 현행 법률 개정¹¹⁾을 통해 기존에 관세청이 담당하는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한 바 있음.

권한 이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등의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 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그 수입업자의 유통물품에 대한 정보와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가 함께 필요함.

해당 정보는 현재 「관세법」 제241조¹²⁾에 따른 수입신고자료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8조¹³⁾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음.

수입신고자료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물품 관련 사항을 관세당국에 신고하는 자료로, 유통이력 확인과 관련하여 수입업체 명, 수입일자, 물품명, 중량, 원산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참고 자료 3 수입신고서 양식 참조)

또한, 사업자등록 자료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정보를 담은 자료로, 유통이력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휴업·폐업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4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 참조)

1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시행 2022. 1. 1.

1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실제 수입신고 양식은 참고자료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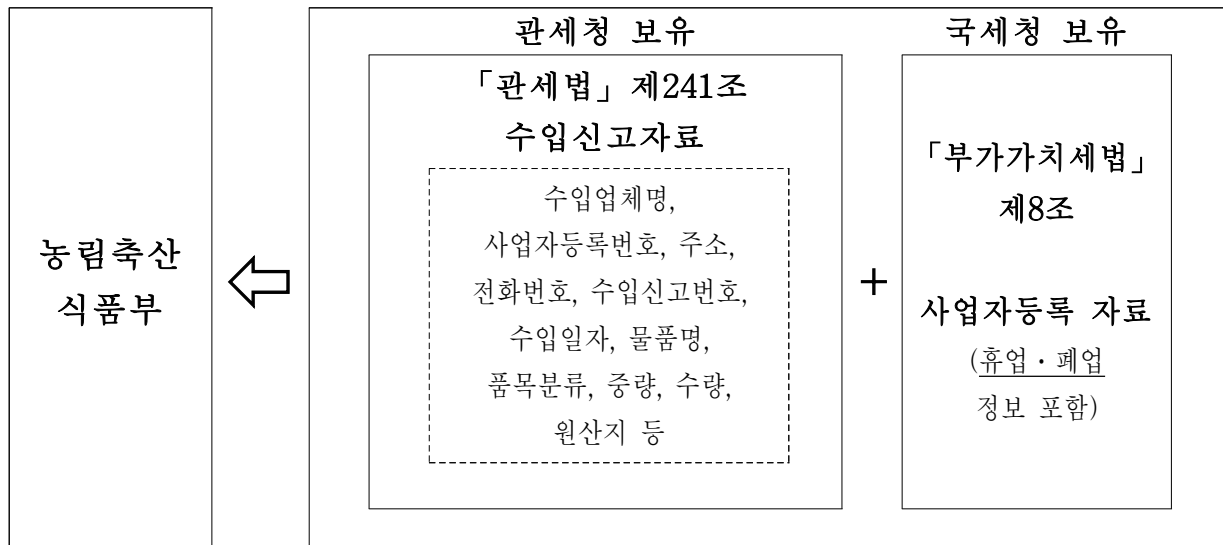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실제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휴업·폐업신고서 양식은 참고자료3 참조

<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자료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및 개정안(2206077)을 바탕으로 작성, 2025. 2. 5.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를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협조¹⁴⁾받아 수집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자료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료 수집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명시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동 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 제10조의4는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¹⁵⁾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¹⁶⁾의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게 됨.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한 물품명, 수입업체명, 원산지 등의 자료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자료와 사업자등록 자료와 관련하여, 이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유사 입법례: 수입 신고 자료 및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15)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인의 휴업·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1. 25.

유사 입법례에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자료의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수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관세법」 제116조¹⁷⁾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7) 「관세법」

-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5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한편, 수입신고자료 중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① 수입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⑤ 수입신고번호, ⑥ 수입일자, ⑦ 품목분류, ⑧ 중량, ⑨ 수량, ⑩ 원산지 등으로 보임.

수입신고자료에는 이 외에도 유통이력 관리와는 관계없는 ⑪ 수입물품의 결제금액, ⑫ 세액합계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수입신고와 관련한 요청 자료의 범위를 유사입법례와 같이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수입업체명, 수입신고번호, 품목분류 등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참고자료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규정

구 분		미표시	거짓표시	기타 위반
1	벌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시정명령(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	
2	과태료 (제18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표시하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협조 거부, 영수증 미보관 등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과징금 (제6조의2)	-	- 2년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위반금액 5배 이하) 부과	-
4	시정명령 (제9조제1항)	- 표시의 이행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 표시방법 위반 : 표시변경, 삭제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구 분		미표시	거짓표시	기타 위반
5	위반자공표 (제9조제2항 ~제4항)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업소에 대하여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		-
6	위반자교육 (제9조의2)	-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업소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4. 12. 20.

참고자료2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농식품부 고시)18)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									
신고자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입농산물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수리일자 (수리전반출일자)					
	품명			원산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I)	업태	업체명	사업자 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거래량 (kg,개)	양도 일자	사유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차량판매상, 노점상)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									
양도 (판매) 내역(II)	업태	성명	차량번호	전화번호	거래량(kg,개)	양도일자			
	※ 업태는 차량판매상, 노점상,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18)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3호) [별지 1]

참고자료3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19)



수 입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

(3쪽 중 제1쪽)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③세관. 과		⑥입항일		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④B/L(AWB) 번호		⑤화물관리번호		⑧반입일		⑨징수형태			
⑩신 고 인				⑮통관계획		⑲원산지증명서유무		⑳총중량	
⑪수 입 자				⑯신고구분		㉑가격신고서유무		㉒총포장갯수	
⑫납세의무자 (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⑰거래구분		㉓국내도착항		㉔운송형태			
		⑱종류		㉕적출국					
				㉖선기명					
				⑬운송주선인					
⑭해외거래처				㉗Master B/L(AWB)				㉘운수기관부호	
㉙검사(반입)장소									
● 품명 · 규격									
⑳품 명					㉚상 표				
㉛거래품명									
㉜모델 · 규격		㉝성분		㉞규격수량		㉟단가		㊱금액	
㉠품목번호				㉡순중량		검사여부		㉢사후확인기관	
㉣과세가격 (미화) (원화)		㉤수량		㉥환급물량		㉦원산지		㉧특수세액근거	
㉨수입요건 확인 (발급서류명)									
㉩세목	㉪세율	㉫감면율	㉬세액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목부호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환 율			
㉰총 과세가격 (미화) (원화)		㉱운임		㉲가산금액		㉳납부(고지)서 번호			
		㉴보험료		㉵공제금액		㉶총 부가가치세과표			
세 목		㉷세 액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관 세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인) ○○세관장 귀하					
개 소 세									
교 통 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부 가 세									
신고지연가산세									
미신고가산세									
㉚총 세액합계		담당자		접수일시		수리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휴업·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²⁰⁾)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checkmark$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
------	------	----------------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연 락 처	(사업장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FAX 번호)

사업장(단체) 소재지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여, []부)

2. 사업장 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생산 요소		주업종 코 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생산 요소		부업종 코 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명세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차임)	
	m ²	m ²				~	원	원	
허가 등 사업 여부	[]신고 []허가	[]등록 []해당 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제조 []입장	[]판매 []유통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부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부			간이과세 포기 신고 여부			[]여 []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함(선택)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함)		
	[]여 []부	[]여 []부			[]여 []부				
신탁재산 여부	[]여 []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등록부상 등록지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